

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양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695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10. 18.

발의자 : 이양수 · 홍문종 · 경대수
이종배 · 문진국 · 박명재
권석창 · 안상수 · 홍문표
이완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어선원 및 어선의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중 일부를 국가예산으로만 지원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예산으로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, 진료비 심사·조정 업무 등을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진료비 심사의 적정성 확보 및 전자청구를 통해 지급기일을 단축(현행 4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)하여 재해어선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.

또한,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승인 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을 우선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어선원 부담을 완화도록 유도하고, 국민건강보험에서 우선 부담한 요양급여에 대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 청구 및 정산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.

아울러, 어업인의 보험가입 편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수납 제도를 신설하고, 어선원 및 어선의 재해보상보험 급여 관련 심사청구에 대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제기하는 재심사청구를 심리·재결(裁決)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두는 어업재해 보상보험 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에 대한 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없어 심사위원회 운영의 책임성·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동 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에 대한 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심사위원회 운영의 책임성·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.

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 제목 중 “국고의”를 “재정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“정한다”를 “정하고 제2항에 따른 지방비지원액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”로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고지원 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.

제23조의3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2항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진료비의 심사·조정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(이하 “전문심사기관”이라 한다)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전문심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의료기관등이 청구한 진료비의 내역이 제22조에 따른 산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진료비의 청구, 심사 및 결정, 지급 방법 및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
제23조의7부터 제23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3조의7(진료비의 이의신청) ① 제23조의3제3항의 심사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중앙회 또는 지정의료기관등은 전문심사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(이하 “이의신청”이라 한다)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로 하여야 하며,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,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3조의8(진료비의 심판청구) ① 제23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심판청구의 제기기간 및 제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의7제2항을 준용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판청구서를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처분을 행한 전문심사기관에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판청구의 절차·방법·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3조의9(건강보험의 우선 적용) ① 제23조의2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자는 중앙회가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

전에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「의료급여법」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(이하 “건강보험 요양급여등”이라 한다)를 받을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을 받은 자가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4조 또는 「의료급여법」 제10조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을 의료기관에 납부한 후에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납부한 본인 일부 부담금 중 제22조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회에 청구할 수 있다.

제23조의10(요양급여 비용의 정산) ① 중앙회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「의료급여법」 제5조에 따른 시장, 군수 또는 구청장(이하 “국민건강보험공단등”이라 한다)이 제23조의9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수급권자에게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을 우선 지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이 이 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요양급여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중앙회가 수급권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한 후 그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지급한 요양급여가 「국민건강보험법」 또는 「의료급여법」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중앙회는 그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청구할 수 있다.

제4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1조의4(신용카드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) ① 보험가입자(제49조의

어선보험가입자를 포함한다)는 보험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
험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로 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보험
료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.

③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,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
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6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
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“제1항에”를 “제1항 및 제2항
에”로 한다.

② 제23조의10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
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.

제70조 중 “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임직원은”을 “중앙회, 수협은행 및
회원조합의 임직원 및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(분과
위원회의 분과위원을 포함한다)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의 개
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<u>국고의</u> 지원) ① (생 약)</p> <p><신 설>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국고지원액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.</p>	<p>제4조(<u>재정</u>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고지원 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 할 수 있다.</p> <p>③ ----- ----- -----정하고 제2항에 따른 지방비지원액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.</p>
<p>제23조의3(진료비의 청구 등) ① (생 약)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	<p>제23조의3(진료비의 청구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진료비의 심사·조정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 기관(이하 “전문심사기관”이라 한다)에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③ 전문심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의료기관등이 청구한 진료비의 내역이 제22조에 따</p>

② 제1항에 따라 청구된 진료비에 관한 심사 및 결정, 지급 방법 및 지급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른 산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진료비의 청구, 심사 및 결정, 지급 방법 및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
제23조의7(진료비의 이의신청) ①

제23조의3제3항의 심사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중앙회 또는 지정의료기관등은 전문심사 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(이하 “이의신청”이라 한다)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로 하여야 하며,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,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3조의8(진료비의 심판청구) ①

제23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에

<신 설>

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심판청구의 제기기간 및 제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의 7제2항을 준용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판청구서를 제23조의7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행한 전문심사기관에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판청구의 절차·방법·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3조의9(건강보험의 우선 적용)

① 제23조의2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자는 중앙회가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「의료급여법」

<신 설>

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(이하 “건강보험 요양급여등”이라 한다)를 받을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을 받은 자가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4조 또는 「의료급여법」 제10조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을 의료기관에 납부한 후에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납부한 본인 일부 부담금 중 제22조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회에 청구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23조의10(요양급여 비용의 정산) ① 중앙회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「의료급여법」 제5조에 따른 시장, 군수 또는 구청장(이하 “국민건강보험공단등”이라 한다)이 제23조의9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수급권자에게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을 우선 지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이 이

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요
양급여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
되면 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
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중앙회가 수급권자에게 요
양급여를 지급한 후 그 지급결
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지급
한 요양급여가 「국민건강보험
법」 또는 「의료급여법」에
따라 지급할 수 있는 건강보험
요양급여등에 상당한 것으로
인정되면 중앙회는 그 건강보
험 요양급여등에 해당하는 금
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청
구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41조의4(신용카드로 하는 보험
료등의 납부) ① 보험가입자(제
49조의 어선보험가입자를 포함
한다)는 보험료 등을 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보험료납부대행기
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납부
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로
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에
는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의 승인
일을 납부일로 본다.

<p>제65조(시효) ① (생략) <u><신설></u>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에 따른다.</p> <p>제70조(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의 제) 이 법에 따른 보험업무에 종사하는 <u>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임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</u> 공무원으로 본다.</p>	<p>③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,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 <p>제65조(시효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제23조의10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.</p> <p>③ 제1항 및 제2항에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70조(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의 제) ----- -----<u>중앙회, 수협은행 및 회원조합의 임직원 및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</u> 공무원이 아닌 위원(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을 포함한다)은----- ----- -----. -----.</p>
---	--